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
제출연월일 : 2009. 8.
제 출 자 : 평창군수

1. 개정이유

○ 『공직선거법』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의거 "평창군 이장협의회 한마음대회"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정을 명확히 하고,

○ 기타 이장 지원사항에 대한 예시조항을 확대해 이장의 실질적인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조례 제6조(임무수행 등 지원) 중 필요경비 지원조항을 4개 조항에서 9개 조항으로 확대

3. 참고사항

가. 관 련 법 령 :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

나. 예 산 조 치 : 해당 없음

다. 관계부서승인 : 해당 없음

라. 입 법 예 고 : 2009. 6. 2 ~ 6. 24(22일간),
제출된 의견 없음

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평창군 조례 제　　호

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임무수행 등 지원)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국내·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교육
2. 상해보험가입
3. 정보화 장비 보급
4. 향토지 구독 지원
5.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
6. 체육대회, 수련대회, 단합대회 등 문화·체육행사 지원
7. 타 시·군·구 이·통장과의 문화·체육·결연 등 교류활동 지원
8. 모범 이장과 퇴임 이장의 표창 및 간담회
9. 기타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임무수행 등 지원)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	제6조(임무수행 등 지원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**4. 향토지 구독 지원**
<신 설>	**5.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**
<신 설>	**6. 체육대회, 수련대회, 단합대회 등 문화·체육행사 지원**
<신 설>	**7. 타 시·군·구 이·통장과의 문화·체육·결연 등 교류활동 지원**
<신 설>	**8. 모범 이장과 퇴임 이장의 표창 및 간담회**
4. (생 략)	9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